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부서명 : 정책기획과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조치사항				비고
	총건수	시정	개선	권고	
합 계	11	3	4	4	
조치완료	1	1	0	0	
조 치 중	10	2	4	4	
장기검토	0	0	0	0	
조치불가	0	0	0	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정 책 기 획 과	권 고	17. 위원회 공개모집 활성화 검토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시민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활성화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 하고, 구미시 산하 위원회에 적합한 인재를 매칭하기 위해 인력풀 제도를 운영중이며, ○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우선적으로 강화 하여, 인력풀 규모를 확대하고, 부서 별로 인력풀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검증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위원회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운영하겠음.	조치중
	권 고	18. 국민제안 제도 홍보 강화 ○ 국민제안이 채택될 경우 포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제도임에도,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함. ○ 이에 따라 국민제안 채택 사례 및 포상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제안공모전 진행 시에 보도 자료, 인스타그램 등의 sns채널,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 및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겠음. ○ 민원성 위주의 실효성 낮은 제안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대학생 정책 제안 논문공모 전’을 개최하여 제안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겠음.	조치중 10월완료예정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정 책 기 획 과	개 선	19. 자치법규 정비 및 지속적 관리 - 자치법규의 정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연계 조치,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 조문 현행화 등을 적기적소에 추진해야 함. -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수립과 함께,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령 불부합, 존치 타당성 등의 상시 검토와 조사를 통한 적시 개정 및 폐지를 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 통보하여 안내하였으며, * 정책기획과-9149(2025.08.04.)호 <u>앞으로도</u> 입법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을 포함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하여 각 부서의 검토 의견 수렴 및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 관리를 지속하겠음.	조치중
	개 선	2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 확대 - 조직 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은 공직사회 전반에 긍정적 동기부여로 작용함. -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급과 분야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23년부터 연간 10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으나 ' 25년부터는 선발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임. * '20년(3명), '21년(2명), '22년(5명) - 적극행정 실천 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발 체계 및 보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정 책 기 획 과	권 고	21. 위원회 전면 정비 및 중추적 역할 필요 ○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에는 기능상 반드시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조차 개최 실적이 없거나 매우 저조한 경우가 존재함. ○ 정책기획과는 시정 전반의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집중 발굴·정비하는 중추적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통합·폐지하고, 기능 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정기적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구미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문 기관 컨설팅을 실시하여, 담당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과정을 거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음. * 신설 시 기존 위원회 활용 또는 분과 위원회 운영, 기능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지속 정비하겠음.	조치중
	권 고	22. 천생산 힐링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천생산 힐링단지 조성 사업의 행정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 및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됨.	○ 공약 총괄 부서로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주요 추진일정과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독려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낭만관광과 답변】 ○ 천생산 힐링단지 조성사업은 2025년 6월 투자심사 의견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중이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정 책 기 획 과	시 정	23. 성과지표 고도화 적극 추진 -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에야 용역이 시행되는 등 -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성과지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는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도구인 만큼, 관련 부서의 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요구함.	- 부서 및 개인평가를 위한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상반기) 시행하고 있음.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25년 성과지표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난 4월 실시하였으며,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한 부서별 자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컨설팅 결과 반영율 : 66% - 향후,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관리 지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 수준을 제고하겠음.	조치중
	시 정	24. 「구미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및 운영 - 시민의 청원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미시 차원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이 필요함. - 현재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청원 심사와 처리 절차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제도적 미흡이 우려됨. - 이에 따라, 「구미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 및 청원의 공정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함.	「청원법」 제8조 및 「청원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구미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22년도에 제정하여 시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다만, 청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 근거 부재로 청원인 구제 절차가 미흡하였으므로, 규정(훈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청원권 보장을 강화하고 청원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하겠음.	조치중 9월 완료예정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정 책 기 획 과	개 선	25. 시정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필요 ○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필요 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시정 전반의 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임. ○ 주요 시책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함.	○ 시정조정위원회는 주요 시책 주관 부서 결정, 유사·중복 행정사무 정비 등 대부분 외부 비공개(내부검토) 사안에 대한 결정 기능을 수행함. ○ 다만, 안전의 성격에 따라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 위촉하겠음.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결정사항) 1.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시책일몰제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치중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완료구분
정 책 기 획 과	개 선	26. 산단도시 구미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 기획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지역 내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산단도시로서의 구미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적 기획 기능 강화와 실행력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정책기획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조정·조율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각 주무과에 정책팀이 신설되었고, 정책기획과와 각 분야별 정책팀과 주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현안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경제국, 첨단산업국과 긴밀히 협업하여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시정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국내외 여건과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요구가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 나가겠음.	조치중
	시 정	27. 「구미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존치 타당성 검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로 제정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음. 상위법 근거가 소멸된 규정은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의 폐지 또는 정비가 필요하며, 집행부는 이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함.	- 훈령제정의 근거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통합 폐지됨.(2023.7.10.) - 통합법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후속 조치 후 실효성이 없어진 「구미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폐지함. (2025.08.13.字) * 정책기획과-9197(2025.08.05.)호 관련	조치완료